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II)*

이 성 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II.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OECD 기업지배원칙의 5대 부문을 근간으로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방향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본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제적 경영감시의 강화이다. OECD 원칙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주주의 권리였다.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수주주의 권리가 보호 되지 못했던 것은 많은 부분 자본시장의 미발달에 기인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소유가 분산되고 자본시장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 나라의 소유경영자 중심의 기업경영에 따른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경영감시의 강화이다. 특히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OECD 원칙에서 두 번째로 제시된 것이 주주의 동등대우였다. 국내에서는 과거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미미했으며, 현재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간헐적 소액주주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시민단체 중심의 소액주주운동이 경영감시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특정 기업에 제한되고 접근방식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전문적인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를 통해서 극복 될 수 있다.

셋째, 채권금융기관이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OECD 원칙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기업지배구조이다. 채권자의 기업지배구조에 참여는 현재 소유경영자를 견제할 만한 뚜렷한 세력이 없는 국내 여건하에서 가장 현실성 있으면서 강력하게 기업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 방식은 채권은행들의 상시적인 협력체의 구성과 주거래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업경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공시 및 투명성은 OECD 원칙에서 네 번째로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포괄적이다. 경영투명성 제고는 한국기업의 경쟁력 회복에서 항상 강조되어 왔던 사항으로, 최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

* 본고는 본지의 지면사정으로 인해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47호('99년 7월)부터 제48호('99년 8월)까지 2회에 걸쳐 신게 되었습니다.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I)은 공정경제 제47호 pp.21~25).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과제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과제
<p>I. 주주의 권리 주주의 권리보호 및 기업지배권 시장의 효율적 운영의 강조</p>	<p>자본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제적 감시기능 강화로 주주의 권리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 지분비율에 비례하지 않는 지배력 원천의 공시 강화 · 출자총액제한과 자사주 취득한도 폐지의 재고
<p>II. 주주의 동등대우 모든 주주의 동등한 대우와 주주권리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소수주주의 권익 강조</p>	<p>소액주주운동을 통한 경영감시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소수주주권 강화 · 소송남발방지와 소송전 구제조치의 활성화 · 주주총회 관련 절차상 주주의 동등대우 · 내부거래와 남용적 자기거래 관련 감시감독의 강화
<p>III.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적극적인 협력 촉진</p>	<p>채권금융기관의 경영감시기능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금융기관의 항시적 기업지배구조 참여방안 마련 · 종업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방안 마련
<p>IV. 공시 및 투명성 주요 기업정보의 적절한 공시를 통해 경영투명성 확보</p>	<p>공시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제도의 강화 · 공시내용의 확대 · 국제적 회계기준의 적용 ·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 전자공시제도의 활성화
<p>V. 이사회 책임 기업전략 제시, 경영진 감독, 주주 및 기업 이익대변 등 이사회 책임 강조</p>	<p>사외이사 선임의 확대 및 역할제고를 통한 이사회 독립성 및 경영감시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경영감독기능 강화 ·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 · 사외이사 특별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 및 사외이사 업무능력 제고 · 이사회 회장과 최고경영자의 역할 구분

기업지배권 시장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분산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현재 국내 시장 상황에서 지배권 시장의 기능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과 자사주 취득한도의 폐지로 내부지분율이 높은 재벌에게 적대적 M&A의 위협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재벌의 내부지분율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¹⁾ 따라서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과 자사주 취득한도의 폐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실제로 30대 재벌의 경우 내부지분율은 '97년 4월에 43%에서 '99년 4월에 50.5%로 증가하였다.

(2) 주주의 동등대우

■ 소수주주권의 강화

OECD원칙에서 언급된 주주의 동등대우는 소수주주 및 외국인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하며,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로 소수주주권과 관련된다.

국내에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권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주주 제안권 및 누적투표제의 신설과 대표소송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향후 실질적으로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소송남발 방지와 소송 이전 구제조치의 활성화

OECD 원칙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인해 소송남발의 위험이 있으며, 소송남발로부터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소수주주 등 투자자의 불만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소송 이전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의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다른 국가에서 시행되는 소송전 구제조치의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 채권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 참여방안

우리 나라 자본시장의 규모와 기능 측면에서 기업지배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적 기업지배구조의 틀이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현황을 반영한다면 채권금융기관의 대기업 지배구조에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상황, 대기업 소유구조 및 재벌총수의 지배력, 소수주주의 지위, 이사회 기능 등을 볼 때 기업경영을 건전하게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채권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에의 참여를 기업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지속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종업원의 기업지배구조 참여방안 논의

OECD 원칙은 종업원의 기업경영 참여를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노사관계가 불안한 국내 기업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발발 이후 종업원의 기업지배구조에의 참여를 위한 이렇다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종업원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업원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참여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또는 노사정위원회 등이 이러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공시 및 투명성

■ 공시내용의 확대

우리 나라의 공시제도는 OECD 원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공시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 추가된 공시내용으로 OECD 원칙에서도 제시된 사항은 상호주식 및 상호지급 보증 등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주석을 통한 공시와 파생금융상품 등 위험요소의 공시 등이다.

OECD 원칙에서 포함된 공시내용으로 향후 국내기업의 공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로 지배구조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들 수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주주,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와 정책에 관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시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공시정보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OECD 원칙은 재무제표가 독립적인 감사인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 산하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국내에서도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OECD 회원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안들도 소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장법인의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계약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시켰다.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기업에 대한 비감사서비스와 관련된 제한조치도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자공시제도의 활성화

OECD 원칙은 정보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전자공시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자공시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는 점은 OECD 원칙에서 언급된 내용과 상응하는 것이다. 향후 전자공시제도가 정보이용자와 기업 측면 모두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5) 이사회에 책임

OECD 원칙은 이사회가 기업지배 및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이사회가 기업 및 주주에 대해서 다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OECD 원칙은 일원적 이사회와 이원적 이사회 제도로 대별되는 국가별 상이한 이사회 구조에 관계없이 어느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사항이 고려되어 작성되었다. 특히 이사회에 주요 감독기능을 자세히 열거함으로써 OECD 원칙은 이사회에 경영감독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

OECD 원칙은 이사회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상당한 정도 독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사회가 기업의 중요이사결정 사안과 관련해서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사외이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이사회 제도는 일원적 이사회 제도이며, 향후에도 이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OECD 원칙이 제시하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는 우리 나라의 이사회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이미 상장기업에 대해서 이사의 1/4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사외이사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의 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길 사항이지만 이사회가 소유경영자로부터의 독립될 수 있도록 일정비율까지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사외이사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사외이사 업무능력 제고

OECD 원칙은 사외이사의 이러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사외이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보요구, 교육훈련 등 사외이사의 현실감각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기업의 부담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외이사에게 정보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영진에게 이를 요구하고 경영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IV. 결론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그 적용에서 회원국들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된 원칙은 일회적인 파급효과를 넘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OECD 원칙이 향후에도 세계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OECD 원칙 자체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방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의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대부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정책입안과 실행에서 참고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OECD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정**